

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

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

기준중위소득

행
정
용
어
한
글
차
이

2023. 7. 28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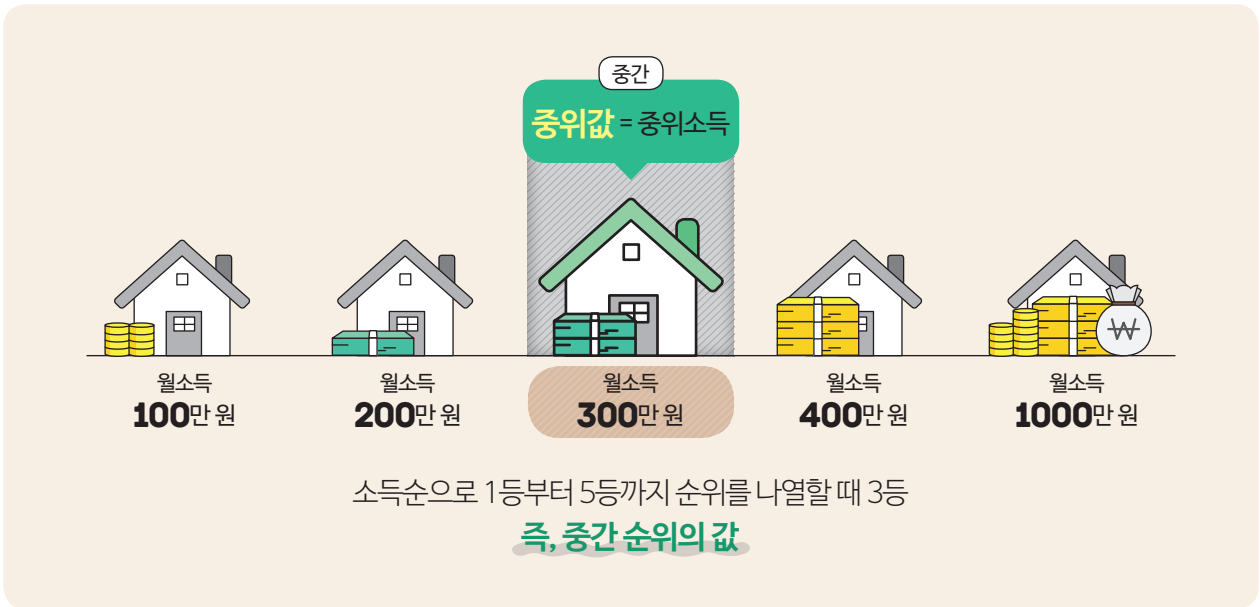
보건복지부



‘중위소득’이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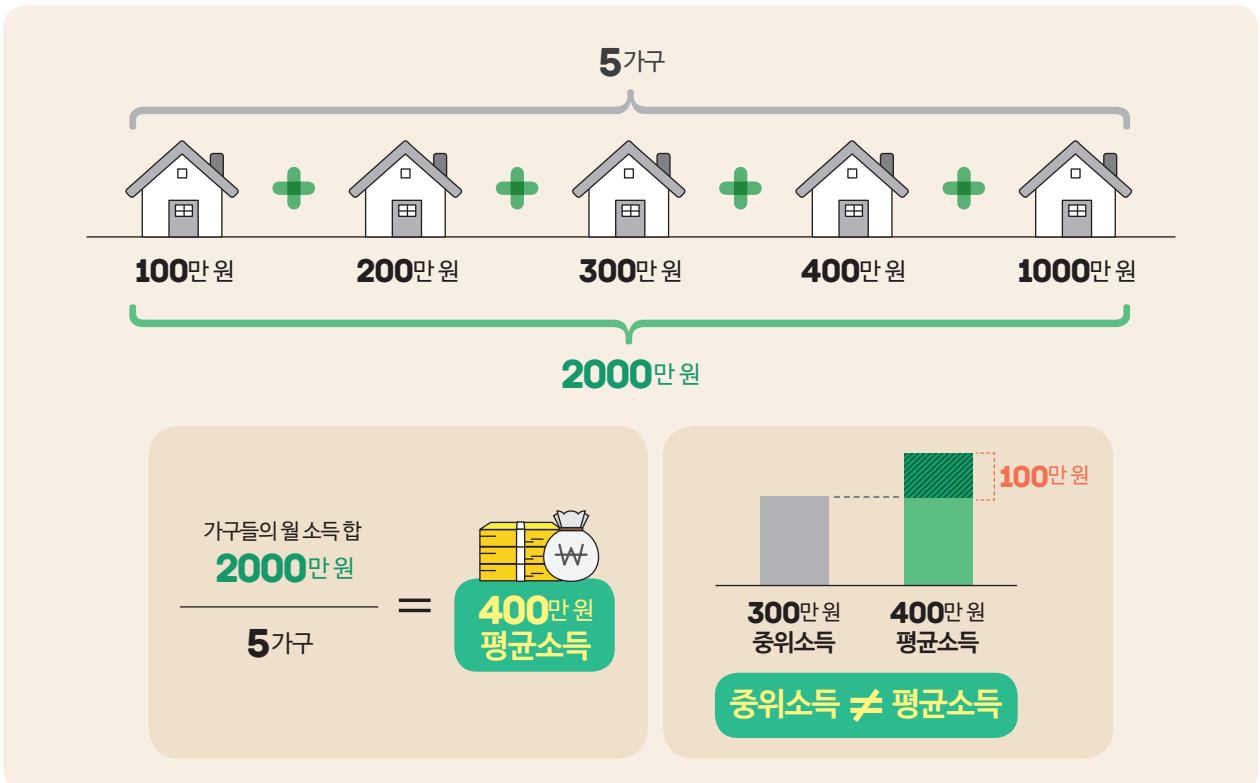
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입니다.

예를 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고,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, 400만 원,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,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.



평균소득이란,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합한 후 가구 수로 나눈 값입니다.

위의 예시에서 5가구의 연소득을 모두 합하면 2000만 원입니다. 가구 수는 총 5가구이니, 평균소득은 2000만 원을 5로 나눈 값인 400만 원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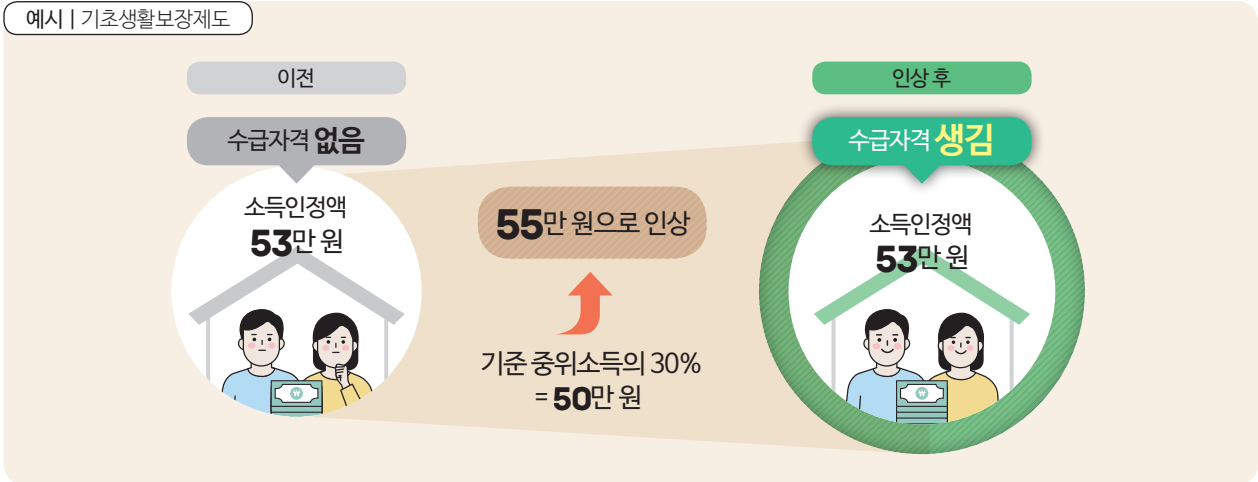
‘기준 중위소득’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

‘기준 중위소득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(급여별)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.

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‘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’인 가구에 지원해왔습니다.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월급 등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,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.

$$\text{소득인정액}^2 = \text{소득평가액} + \text{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}$$

따라서 ‘기준 중위소득’이 인상되면,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위치해 있던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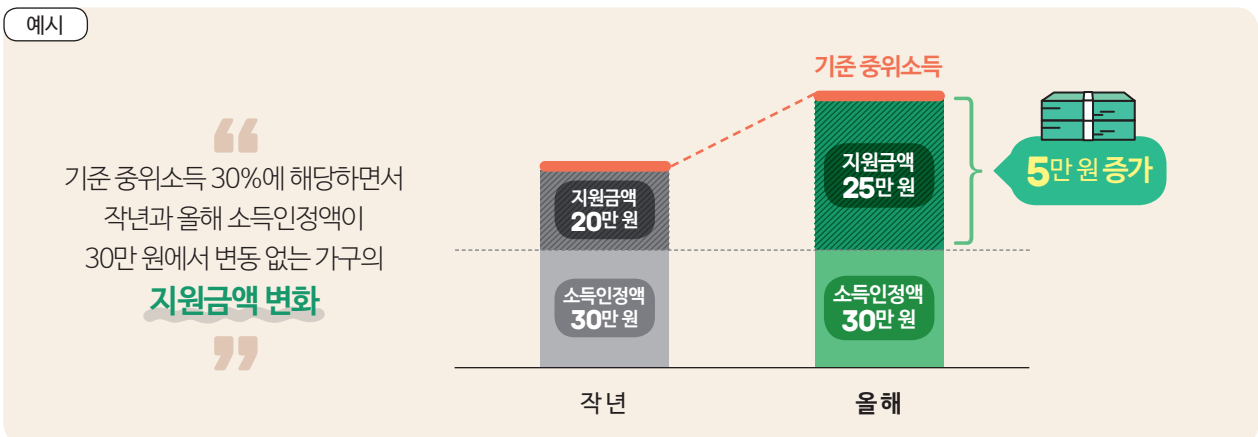


2 소득인정액=소득평가액(=실제소득-가구특성별 지출비용-근로소득공제)+재산의 소득환산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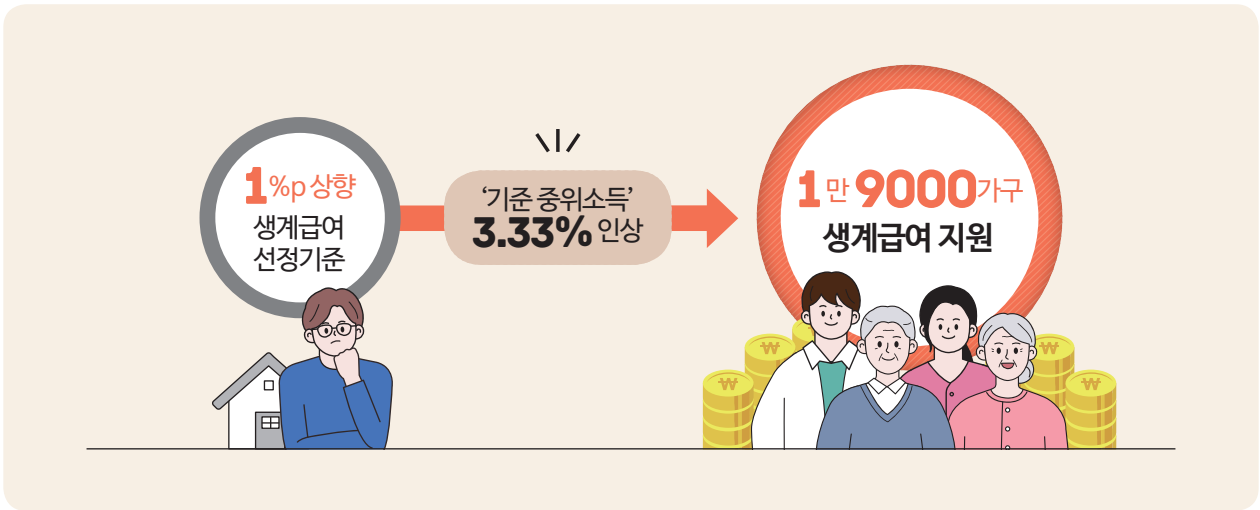
‘기준 중위소득’은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

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.

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인 ‘기준 중위소득의 30%’의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. 따라서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‘기준 중위소득’이 인상된 만큼 지원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.



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%p 상향되면 ‘기준 중위소득’이 3.33%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
 이로 인해 약 1만 9000 가구가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.



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

정부는 복지정책을 만들 때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.

평균소득을 활용하면 소득이 높은 소수의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려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복지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중위소득 개념을 활용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. 중간에 위치한 가구나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복지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에 최근의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통해 ‘기준 중위소득’을 결정³해 복지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.



3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통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‘기준 중위소득’을 발표